

【별표 7】

근무성적평정위원회 평가기준

(제33조 제3항 관련)

평정 등급(비율)	평정가능 점수
수(20%)	90점 이상 100점 이하
우(40%)	70점 이상 90점 미만
양(30%)	55점 이상 70점 미만
가(10%)	55점 미만

※ "가" 등급 대상자가 없는 경우 "양" 등급 비율에 가산하여 적용

※ 소수점 이하 등급 발생 시 배정 기준

- ① 소수점 이하 점수가 높은 등급 순으로 인원 배정
- ② 소수점 이하 점수가 동일한 경우 상위 등급 배정